

제22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2017. 2. 24. ~ 3. 3.)

조례안 및 일반의안

(조례 2건, 규칙 1건, 결의문 1건)

거창군의회

--- 목 차 ---

의안 번호	건 명	쪽수
2017-10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17-11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17-12	거창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10
2017-22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15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10
----------	---------

발의일자	2017. 2. 14.
발 의 자	김종두 의원 외 10명

1. 제안이유

-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비판 여론에 따라 사실상 의정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안 제2조 제4항) 신설
 -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1) 「지방자치법」 제33조
- (2)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집행부의견조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7. 2. 10. ~ 2. 16.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p> <p>① ~ ③ (생략)</p> <p>④ <신설></p>	<p>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u></p>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17 ~ 11
----------	-----------

발의일자	2017. 2. 14 .
발 의 자	박희순 의원 외 10명

1. 제안이유

거창군의회는 자치입법기능 활성화 및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 의장, 부의장의 임기 및 군정질문에 대한 절차 규정 등을 명시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거창군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장과 부의장 임기 구체화(안 제9조제2항, 제3항)

- 현행: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2년 【지방자치법】
 변경: 선출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 ※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이 늦어지더라도 전반기 의장단 임기는 6월 30일로 종료하고 후반기 의장단 임기 시작일은 7월 1일이 되도록 변경함.
- 후반기 의장·부의장이 선출되지 않고 임기가 만료된 경우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다음 회기에서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

나.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에 대한 절차규정 신설(안 제65조의2)

-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절차를 예산안과 결산에 관한 심사 절차와 동일

다. 군정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절차규정 신설(안 제66조의2)

- 군정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절차를 회의규칙으로 명문화
- 본 질문과 보충질문 방법 및 질문시간 구체화하여 혼란 방지

현행(관례상)	변경(회의규칙 명시)	비 고
본 질문 20분	본 질문 20분	일괄질문
보충질문 10분 (답변시간 제외)	보충질문 20분 (답변시간 포함)	일문일답
추가 보충시간 없음	추가 보충시간 10분 (의장이 허가하는 경우)	

- 군정질문에 필요한 사항 및 절차 등 명시
 - 의원은 질문요지서 작성하여 의장 제출 ⇒ 의장은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송부
 - 군수는 군정질문 답변서를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8조 제2항, 제71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7. 2. 10. ~ 2. 1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③ 폐회 중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41조제1항 중 “표기”를 “표결”로 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 심사에 관해서는 예산안과 결산에 관한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6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군정에 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 전반 또는 군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다.

②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와 답변할 사람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군정질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서를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의원별 본 질문 시간은 20

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보충질문은 제4항의 본 질문의 답변을 들은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본 질문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10분을 추가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균정질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p> <p>① (생략)</p> <p>② <u>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u></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u></p> <p>③ <u>폐회 중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u></p>
<p>제41조(표결방법) ① <u>표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u></p> <p>② ~ ④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41조(표결방법) ① <u>표결</u>-----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65조의2(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p> <p>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 심사에 관해서는 예산안과 결산에 관한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를 준용한다.</p>	<p>제65조의2(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p> <p><u>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 심사에 관해서는 예산안과 결산에 관한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를 준용한다.</u></p>
<p>제66조(군수의 출석요구)</p> <p>① ~ ③ (생략)</p> <p>④ <u>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답변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66조(군수의 출석요구)</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삭 제></p>

<신 설>

제66조의2(군정에 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 전반 또는 군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다.

②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와 답변할 사람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군정질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서를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의원별 본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보충질문은 제4항의 본 질문의 답변을 들은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본 질문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보충 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10분을 추가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군정질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거창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17 ~ 12
----------	-----------

발의일자	2017. 2. 13.
발 의 자	표주숙 의원 외 4명

1. 제안이유

- 최근 핵가족화와 배우자 사별, 고령화 등으로 홀로 사는 노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로 노인 고독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노후관리에 대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다. 고독사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마. 고독사 예방 지원대상자 및 지원사업 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 나. 예산조치: 연간 134백만원
- 다. 합 의: 기획감사실, 복지정책과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7. 2. 13. ~ 2. 18.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별첨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가족과 별거하며 사실상 혼자 살아가는 노인을 말한다.
3. “고독사”란 홀로 사는 노인 혼자 임종을 맞음으로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노인”이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5.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에게 대한 정기적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현황조사를 통한 등록·관리체계 구축
2.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

3.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주민 홍보
5.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
6.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
7.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소재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고독사 위험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군수는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발굴된 고독사 위험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말벗,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4. 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
- 관련 조문: 제7조(지원사업 등)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총 비용(a - b)	134	134	134	134	134	670
세출 균비(a)	134	134	134	134	134	670
세입 균비(b)	0	0	0	0	0	0

- ### 3. 관련 의견: 거창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노인 고독사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노후관리에 대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지원대상자 조사: 15,600명 30,000천원
- 심리상담 및 치료: 30,000천원
-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1,496명 51,012천원
-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105대 14,696천원
- 무연고자 장례비 지원: 2명 8,000천원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박희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7 - 22
----------	-----------

발의 연월일: 2017. 2. 14.

발의자: 김종두, 표주숙, 박희순
변상원, 이흥희, 강철우, 최광열
형남현, 이성복, 권재경, 김향란

1. 주 문

-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 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지방분권 실현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중앙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의사와 재원을 결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 역할에 그침.
- 이런 현실 속에서도 지방정부는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지역발전을 이룩하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중앙정부가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국민의 생활이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지방자치가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제대로 작동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
- 과도한 중앙정부 권한 집중, 부실한 지방재정,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단체장이 행사, 지방의회와 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지방의원 유급제 등의 문제로 지방자치발전을 저해

- 이에 우리 거창군의회는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인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함.

3. 주요내용

-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
-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
-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거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
-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 요구
- 의회사무직원에게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구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중앙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의사와 재원을 스스로 결정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보다는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치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지방정부는 주민들과 더불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전략을 구상하고 이에 따른 지방조직개편, 인사, 도시계획, 조례 제정 등을 수행하여 지역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간의 서비스 경쟁으로 지방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쟁력 강화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중앙정부가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국민의 일상생활이 불편 없이 평온을 유지하는 것은 지방자치가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동안 우리 지방의원들은 지역의 최일선에 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왔다. 앞으로도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전문성을 향상시키며 지역발전이 국가 발전이라는 신념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지방자치가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다음과 같이 산재하고 있다.

첫째, 지역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결정되고, 행정, 재정을 포함한 권한이 8:2로 배분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주도는 74.2%에 불과하여 자치단체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자치단체의 수가 114개에 달하는 등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

둘째, 기관 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면서도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수장인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기관분립 의미를 퇴색케 하여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고 있으며,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막고 있다.

셋째,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유독 지방의원에게만 주민여론과 심사를 통한 수당제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주민들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등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우리 거창군의회에서는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다 음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거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의회사무직원에게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2017년 3월 3일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